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규정 신설〉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63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10.
3.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징수 충당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착오, 이중납부 등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매년 과태료 과오납 금액만 수억원에 달하는 사정임에도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과오납금은 환급 관련 법규정이 미흡하여, 환급 대상자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재산과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발생 사실 의무 통지 규정 및 직권 지급제도를 구체화하여 국민 재산 보호 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의8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 절차를 현행법에 일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제7조의9 및 제7조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8(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 납부액 또는 환급 금액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7조의9(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납세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10(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직권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8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 ¹⁾ 에 따라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한 자 중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직권지급에 미리 동의한 경우 2. 제7조의9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을 직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금의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의8 (생략) ²⁾	제7조의11 (현행 제7조의8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 ④ 삭제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8(제3자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해당 납부의무자를 위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납부는 납부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현행법³⁾상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 중 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을 의미함.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중 제재처분 성격의 수입으로 주로 구성됨.⁴⁾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 규정이 미비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다만, 현행법 체계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법률이며, 환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근거 법률에 규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각각 국세·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국세·지방세수입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국세기본법」⁵⁾, 「지방세기본법」⁶⁾에 일괄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지방행정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4)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과태료도 제재처분 성격의 수입이나, 소관 부처(법무부)가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별도의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어 포함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임.

5)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총당)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6)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총당과 환급)

제재·부과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세외수입의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관련 규정 소재]

구분		환급 규정	채납처분 규정
국가	국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세외수입	개별 근거 법률에 규정 또는 미규정	개별 근거 법률에 규정 또는 미규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머지 수입	개별 근거 법률에 규정 또는 미규정	개별 근거 법률에 규정 또는 미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구체적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 규정에 관한 입법례는 다음 표와 같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규정 현황]

근거 법률	명칭 또는 유형	환급 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부담금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다.

제61조(물납재산의 환급)
제62조(지방세 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근거 법률	명칭 또는 유형	환급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설치 비용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 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 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 전법	배출부과금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 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 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정·조정 방법 및 환급 절 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 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 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추징·환급 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명주소 법	원상복구비용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⑦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교통정 비 촉진법	부담금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⑤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 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 (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률	명칭 또는 유형	환급 규정
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그 밖에 「지방회계법」 제28조⁷⁾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오납금 환급(반환)에 관한 일반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7)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라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환급 규정이 미비한 수입이 있다면, 해당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개별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문 의 처
02)6788-5333

8) 참고로,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환급규정이 미비함을 개정안 제안의 주요 이유로 언급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